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미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제안경위

가. 대상안건

의안번호	제출자	의안명
제437호	이미자 의원 외 6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436호	이미자 의원 외 7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나. 제출일자 : 2021년 12월 8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2월 8일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 1)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2)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4조)
- 3) 위원회의 위원 임명제한 및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안 제5조 ~ 제6조)
- 4) 징계의 감경 및 심문, 진술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2) 위원회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안 제2조 및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 및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드립니다.

○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2021.10.8. 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규칙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법 제7조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임.

지방공무원법 (2022.1.13.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2.1.13. 시행)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p>할 경우에는 <u>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p> <p>⑤ <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만, 시험 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p>⑥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p>⑦ <u>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③ <u>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u> 2. <u>삭제 <2021. 11. 30.></u> 3. <u>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u>
---	---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 임명 제한 사유,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경우 감경 기준에 따른 감경 및 증인 심문과 진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는 법 제7조제8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예 따라 시행일에 맞춰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2022.1.13. 시행)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 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도의회사무처장,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군·구의회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

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제4

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2.1.13. 시행)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 11. 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 11. 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